Citi® Supplier Finance 상품설명서(은행용)

본인은 ㈜한국씨티은행과 Citi® Supplier Finance 를 약정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고객확인: 명/인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Citi® Supplier Finance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 상품의 약정서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Citi® Supplier Finance 구매기업용 / 판매기업용 약정서가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Citi® Supplier Finance 구매기업용 / 판매기업용 약정서가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**반드시**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
1.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- 상품명: Citi® Supplier Finance
- 상품 개요
  - 구매기업은 다수의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내역을 한국씨티은행의 전용시스템인 CSF 에 등록하고, 해당 거래의 결제 만기일에 결제하는 지급 서비스 상품입니다.
  - 은행은 구매기업의 구매결제를 대행하는 지급결제 대리인 (Agent)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-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추천에 따라 등록되고, 구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은행에 **비소구조건**으로 할인(매각)하여 매출 대금을 선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거래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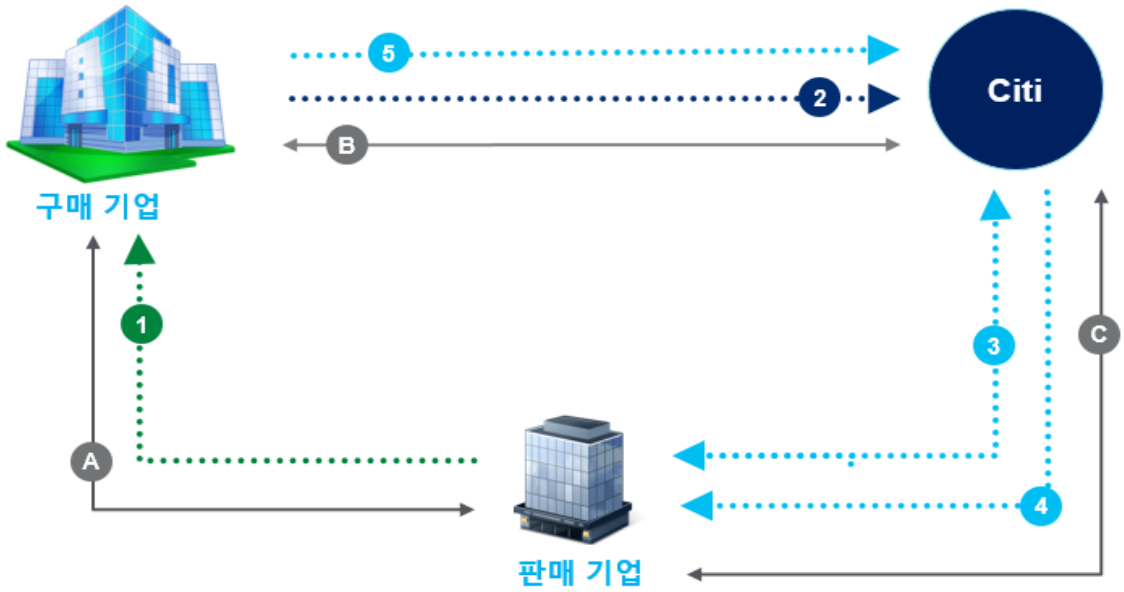

○ 계약 관계

A.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 간 상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.

B. 은행에서는 구매 기업과 Citi® Supplier Finance 구매기업용 약정서를 체결합니다.

C. 은행에서는 판매 기업과 Citi® Supplier Finance 판매기업용 약정서를 체결합니다.

○ 거래 관계

① 판매 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 기업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.

② 구매 기업에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, 확정된 인보이스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 지시를 합니다.

③ 판매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해당 인보이스가 지급 확정된 것을 통지 받고, 할인 요청을 하여 대금을 입금받거나, 또는 할인 신청을 하지 않고 만기에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은행은 판매 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,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 기업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합니다.

⑤ 결제일에 구매 기업은 지정된 결제 계좌에 구매 대금을 지급합니다.

■ 상품의 특성

○ 구매 기업은 만기가 도래된 인보이스의 대금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결제 계좌에 지급합니다.

○ 은행은 등록된 인보이스 정보를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에 제공합니다.

○ 판매기업은 본 상품에 참여 시 자동할인식 또는 선택할인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**자동할인식:** 별도의 할인지시 없이 구매기업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

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할인되어 소정의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대금이 등록된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.

- **선택할인식:** 판매기업은 결제 만기일로부터 [ ]영업일 이전까지 할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구매기업이 만기에 결제를 했을 때 해당 결제대금이입금됩니다. 즉, 은행은 구매업체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

- 은행은 경우에 따라 판매 기업의 할인 신청(매출채권 매각거래)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할인 신청 시 해당 인보이스 금액의 일부 금액만 할인할 수 없고, 전체 금액만 할인할 수 있습니다.
- 구매기업이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할인되어 선지급이 된 경우, 은행은 판매업체에게 해당 구매내역에 대해서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**비소구조건**의 상품입니다.
- 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아 매출채권 할인 시 구매기업으로 양도통지를 합니다.

2. 거래 관련 비용

■ 할인 수수료: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 시 (할인 신청 시) 발생하는 수수료

- 구매 기업: 해당사항 없음
- 판매 기업:

인보이스 금액 * 할인수수료율 * 잔존일수 / 360 또는 365

- 인보이스 금액: 구매 기업에서 지급 확정한 금액 (매출채권 금액)
- 할인수수료율: 약정서 상 명시된 수수료율 (기간별 시장 금리 + 가산 금리)

통화	적용 방식	기간별 시장 금리	가산 금리
☐ KRW	☐변동 ☐고정		%
☐ USD	☐변동 ☐고정		%
☐ EUR	☐변동 ☐고정		%
☐ 기타 ( )	☐변동 ☐고정		%

- 잔존일수: 할인 신청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일수
- 할인 신청된 인보이스 금액의 통화에 따라 360일 또는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
- 할인 요청일에 할인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
■ 취급 수수료: 거래 건별로 발생하는 수수료

- 구매 기업:

□ 정액제	건당	원	거래 건별로 발생
□ 정률제	인보이스 금액의	%	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발생
□ 면 제	해당사항 없음		

○ 판매 기업:

□ 정액제	건당	원	거래 건별로 발생
□ 정률제	인보이스 금액의	%	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발생
□ 면 제	해당사항 없음		

■ 중도상환 수수료: 상품 거래 구조 상 중도 상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중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3. 계약 기간 및 계약의 해지

■ 계약 기간: 별도의 계약 해지 절차가 없는한 계약은 유지됩니다.

■ 계약 해지:

○ 구매 기업: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의사를 은행으로 전달하고, 해지 시 미지급된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급합니다.

○ 판매 기업: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의사를 은행으로 전달하고, 미지급된 인보이스 금액이 있는 경우 해지 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할인을 하거나 별도로 구매 기업과 지급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.

○ 은행: 해지를 위해 해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합니다.

○ 양 당사자는 각 상대방이 본 약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, 10일전 사전 통지하고, 동 기간 동안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으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4. 금융 소비자의 권리

■ 금리인하요구권

○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개선, 신용등급상승 등)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30조의 2)를 말합니다.
*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금리는 할인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.

■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*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8일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여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5. 유의 사항

■ Citi® Supplier Finance의 제한

- 당행의 연체 대출금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 보유자,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본 상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만기일에 미지급 시 별도의 연체료는 없으나 당행 내부 신용 심사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■ 기타: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고객센터(1588-7000)**,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citibank.co.kr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**(국번없이 1332) 등에 **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
Citi® Supplier Finance 상품설명서(고객용)

본인은 ㈜한국씨티은행과 Citi® Supplier Finance 를 약정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고객확인: 명/인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Citi® Supplier Finance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 상품의 약정서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Citi® Supplier Finance 구매기업용 / 판매기업용 약정서가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Citi® Supplier Finance 구매기업용 / 판매기업용 약정서가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**반드시**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
1.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

- 상품명: Citi® Supplier Finance
- 상품 개요
  - 구매기업은 다수의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내역을 한국씨티은행의 전용시스템인 CSF 에 등록하고, 해당 거래의 결제 만기일에 결제하는 지급 서비스 상품입니다.
  - 은행은 구매기업의 구매결제를 대행하는 지급결제 대리인 (Agent)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-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추천에 따라 등록되고, 구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은행에 **비소구조건**으로 할인(매각)하여 매출 대금을 선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거래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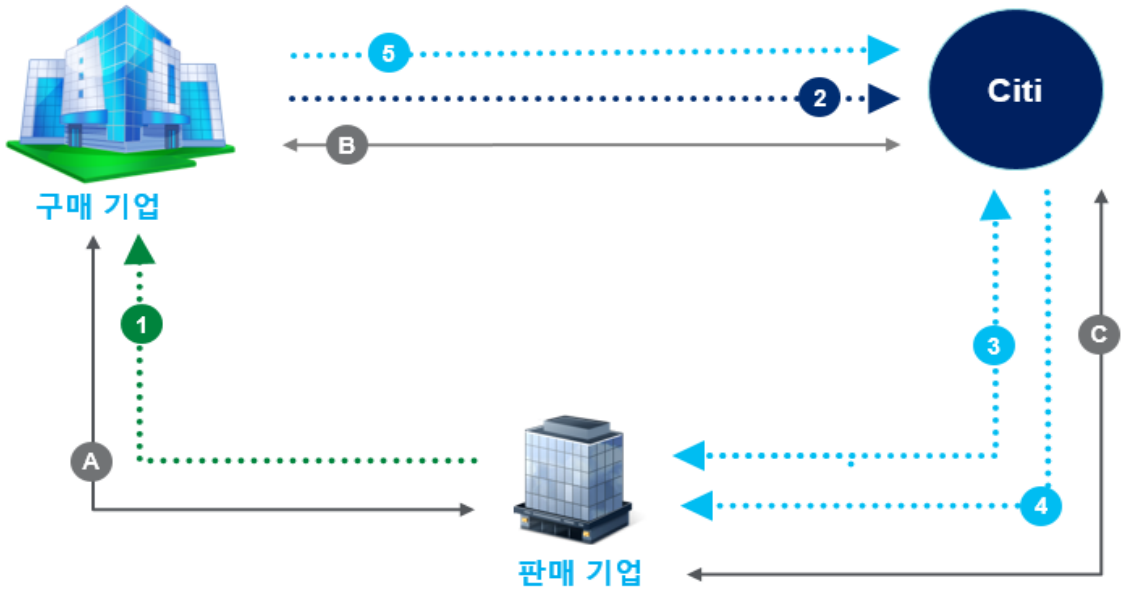

○ 계약 관계

D.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 간 상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.

E. 은행에서는 구매 기업과 Citi® Supplier Finance 구매기업용 약정서를 체결합니다.

F. 은행에서는 판매 기업과 Citi® Supplier Finance 판매기업용 약정서를 체결합니다.

○ 거래 관계

⑥ 판매 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 기업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.

⑦ 구매 기업에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, 확정된 인보이스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 지시를 합니다.

⑧ 판매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해당 인보이스가 지급 확정된 것을 통지 받고, 할인 요청을 하여 대금을 입금받거나, 또는 할인 신청을 하지 않고 만기에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.

⑨ 은행은 판매 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,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 기업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합니다.

⑩ 결제일에 구매 기업은 지정된 결제 계좌에 구매 대금을 지급합니다.

■ 상품의 특성

○ 구매 기업은 만기가 도래된 인보이스의 대금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결제 계좌에 지급합니다.

○ 은행은 등록된 인보이스 정보를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에 제공합니다.

○ 판매기업은 본 상품에 참여 시 자동할인식 또는 선택할인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▪ **자동할인식:** 별도의 할인지시 없이 구매기업에서 구매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

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할인되어 소정의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대금이 등록된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.

- **선택할인식:** 판매기업은 결제 만기일로부터 [ ]영업일 이전까지 할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구매기업이 만기에 결제를 했을 때 해당 결제대금이입금됩니다. 즉, 은행은 구매업체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

- 은행은 경우에 따라 판매 기업의 할인 신청(매출채권 매각거래)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할인 신청 시 해당 인보이스 금액의 일부 금액만 할인할 수 없고, 전체 금액만 할인할 수 있습니다.
- 구매기업이 결제일에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할인되어 선지급이 된 경우, 은행은 판매업체에게 해당 구매내역에 대해서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**비소구조건**의 상품입니다.
- 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아 매출채권 할인 시 구매기업으로 양도통지를 합니다.

2. 거래 관련 비용

■ 할인 수수료: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 시 (할인 신청 시) 발생하는 수수료

- 구매 기업: 해당사항 없음
- 판매 기업:

인보이스 금액 * 할인수수료율 * 잔존일수 / 360 또는 365

- 인보이스 금액: 구매 기업에서 지급 확정한 금액 (매출채권 금액)
- 할인수수료율: 약정서 상 명시된 수수료율 (기간별 시장 금리 + 가산 금리)

통화	적용 방식	기간별 시장 금리	가산 금리
☐ KRW	☐변동 ☐고정		%
☐ USD	☐변동 ☐고정		%
☐ EUR	☐변동 ☐고정		%
☐ 기타 ( )	☐변동 ☐고정		%

- 잔존일수: 할인 신청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일수
- 할인 신청된 인보이스 금액의 통화에 따라 360일 또는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
- 할인 요청일에 할인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
■ 취급 수수료: 거래 건별로 발생하는 수수료

- 구매 기업:

□ 정액제	건당	원	거래 건별로 발생
□ 정률제	인보이스 금액의	%	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발생
□ 면 제	해당사항 없음		

○ 판매 기업:

□ 정액제	건당	원	거래 건별로 발생
□ 정률제	인보이스 금액의	%	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발생
□ 면 제	해당사항 없음		

■ 중도상환 수수료: 상품 거래 구조 상 중도 상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중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3. 계약 기간 및 계약의 해지

■ 계약 기간: 별도의 계약 해지 절차가 없는한 계약은 유지됩니다.

■ 계약 해지:

○ 구매 기업: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의사를 은행으로 전달하고, 해지 시 미지급된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급합니다.

○ 판매 기업: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의사를 은행으로 전달하고, 미지급된 인보이스 금액이 있는 경우 해지 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할인을 하거나 별도로 구매 기업과 지급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.

○ 은행: 해지를 위해 해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합니다.

○ 양 당사자는 각 상대방이 본 약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, 10일전 사전 통지하고, 동 기간 동안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으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4. 금융 소비자의 권리

■ 금리인하요구권

○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재무상태개선, 신용등급상승 등)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30조의 2)를 말합니다.
*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금리는 할인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.

■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*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8일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여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5. 유의 사항

■ Citi® Supplier Finance의 제한

- 당행의 연체 대출금(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) 보유자,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본 상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만기일에 미지급 시 별도의 연체료는 없으나 당행 내부 신용 심사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■ 기타: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고객센터(1588-7000)**,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citibank.co.kr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**(국번없이 1332) 등에 **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